

부속 문서 2장:

추적성

문서 SA-S-SD-20

버전 1.2

KO

2024년 7월 27일 번역 출간

2024년 6월 11일부터 구속력 발생

본 문서에 포함된 내용:

[S02 추적성](#)



**RAINFOREST
ALLIANCE**



열대우림 동맹은 자연을 보호하고 농부와 삼림 공동체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와 시장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더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문서명	최초 발행일자	종료일자
부속 문서 2장: 추적성	2022년 7월 1일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연관 문서		
SA-S-SD-1 열대우림 동맹 2020 지속가능 농업 기준, 농장 요건		
SA-S-SD-2 열대우림 동맹 2020 지속가능 농업 기준, 공급망 요건		
대체	해당	
SA-S-SD-20-V1.1 부속 문서 2장: 추적성, 2023년 2월 6일 발행	농장 및 공급망 인증서 보유자	

부속 문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인증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

열대우림 동맹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www.rainforest-alliance.org 를 방문하시거나 info@ra.org 또는 열대우림 동맹 암스테르담 사무소(De Ruijterkade 6, 1013AA Amsterdam, The Netherlands)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번역 면책조항

번역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한 의미에 관해 질문이 있는 경우, 더 명확한 이해를 위해 공식 영문 버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번역으로 인해 생긴 의미의 불일치 또는 차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심사 또는 인증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열대우림 동맹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복제, 수정, 배포 또는 재발행 등 본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개요

본 문서의 주요 수정 사항 개요

SA-S-SD-20-V1.2 부속 문서 2장: 추적성, 2024년 6월 11일 발행

이전 버전과 비교

SA-S-SD-20-V1.1 부속 문서 2장: 추적성, 2023년 2월 6일 발행

조	주제	변경 사항
1	매스 밸런스	캐슈 및 아몬드에 매스 밸런스가 적용된다는 내용 추가
1	매스 밸런스	주요 허브류 및 향신료의 매스 밸런스 요건에 관한 명확한 설명 추가
3	2.1.9	캐슈 및 아몬드의 전환율 추가
4	2.3.3 및 2.3.4 원산지 일치	원산지 일치 규칙 범위에 관한 명확한 설명 추가
4	2.3.3 및 2.3.4 원산지 일치	제2단계 요건 범위에 관한 명확한 설명 추가
4	2.3.3 및 2.3.4 원산지 일치	원산지 지역 접근법에 관한 텍스트 간소화



목차

S02 추적성	5
1. 서문	5
추적성 요건의 범위 및 적용성	5
추적성 유형	5
• <i>아이덴티티 프리저브드(IP)</i>	5
• <i>세그리게이션(SG)</i>	5
• <i>매스 밸런스(MB)</i>	6
추적성 유형의 범위	6
2. 추적성	7
요건 2.1.7 – 중복 판매	7
3. 온라인 플랫폼의 추적성	7
추적성 플랫폼 활동 내용	7
요건 2.1.9 – 인증 제품 전환	7
요건 2.1.9 – 전환율	8
요건 2.2.1 – 인증 제품 발신 거래 관리	9
요건 2.2.2 – 인증 제품 수신 거래 관리	9
요건 2.2.3 – 인증 수량 제거	9
요건 2.2.1 및 2.2.3 – 보고 시기	9
요건 2.2.5 – 거래 총계	10
4. 매스 밸런스	10
요건 2.3.1 – 제품 전환	10
요건 2.3.3 및 2.3.4 – 원산지 일치	11
제1단계 요건	11
제2단계 요건	12
원산지 지역 접근법	12



S02 추적성

1. 서문

본 문서는 열대우림 동맹 2020 지속가능 농업 기준의 추적성 관련 장애 나온 요건에 관한 추가 세부사항을 제공합니다.

규칙 및 요건의 시행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문서 SA-G-SC-42 추적성 안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적성 요건의 범위 및 적용성

추적성은 공급망 전체를 통해 인증 제품의 흐름도를 추적할 수 있도록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추적성은 열대우림 동맹 인증 제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반드시 열대우림 동맹 인증이라는 표시를 준수하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증 제품을 취급하는 모든 농장 및 공급망 인증서 보유자는 열대우림 동맹 인증 플랫폼(Rainforest Alliance Certification Platform, RACP)에 등록한 후 상황별 체크리스트에 제시된 필수 요건에 기반하여 추적성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종래의 수량과 열대우림 동맹 2020 지속가능 농업 기준(Sustainable Agriculture Standard, SAS)에 대해 인증된 수량은 추적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2.2장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추적성을 사용할 수 있는 작물에만 해당합니다.

소매업체는 일반적으로 추적성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소매업체는 추적성에 참여하고자 하는지 선택할 수 있고 참여를 원한다면 제조업체로부터 거래를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매업체가 SD/SI 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차 제외)에는 이들에게도 추적성 요건이 적용됩니다.

추적성 유형

다음의 추적성 유형은 인증 공급망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상위' 등급부터 '하위' 등급순(*아이덴티티 프리저브드(IP)*, *세그리게이션(SG)*, *매스 밸런스(MB)*)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 **아이덴티티 프리저브드(IP)**

열대우림 동맹 인증 제품을 농장 인증서 보유자까지 추적할 수 있는 추적성 유형입니다. 이는 가장 엄격한 추적성 유형입니다. 인증 제품이 비인증 제품 또는 다른 공급지에서 온 인증 제품과 섞이지 않습니다. 인증 제품이 다른 인증 공급지/농장에서 왔지만 아이덴티티가 보존된 경우에는 특수형인 혼합형 *아이덴티티 프리저브드(Mixed IP)*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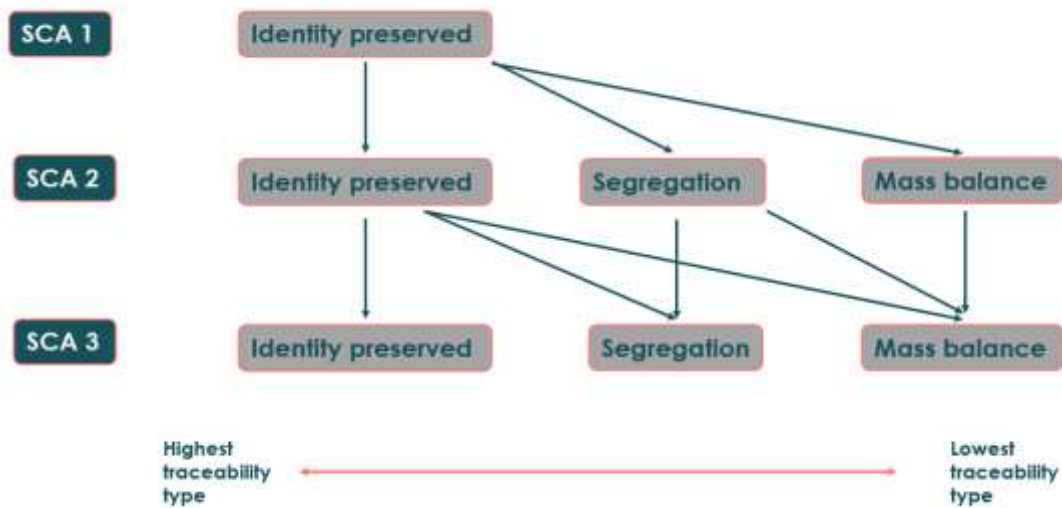
- **세그리게이션(SG)**

인증 제품을 분리해서 보관하고 실물로 그리고 문서상으로도 비인증 제품과 절대 혼합하지 않는 추적성 유형입니다. 세그리게이션은 공급망의 수령, 가공, 포장, 보관, 수송 전 단계에서 이뤄집니다. 이는 공급지의 아이덴티티는 알 수 없지만 제품이 전면 인증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매스 밸런스(MB)

매스 밸런스는 인증 제품과 비인증 제품이 섞일 수 있는 관리형 추적성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인증 제품으로 구매한 제품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의 제품이 인증 제품으로 판매되지 않아야 합니다. 공급망 인증서 보유자(CH)는 내부 문서에 모든 인증/비인증 투입량 및 산출량을 관리해야 하고, 추적성 플랫폼에 인증 수량의 판매를 정확하게 등록해야 합니다.



SCA = 공급망 업체

한 추적성 유형에서 다른 추적성 유형으로 등급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투입은 세그리게이션 추적성 유형인데 산출은 아이덴티티 프리저브드 추적성 유형으로 생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위 추적성 유형에서 하위 추적성 유형으로 등급을 낮추는 것(예: 세그리게이션에서 매스 밸런스)은 가능합니다.

추적성 유형의 범위

아이덴티티 프리저브드 추적성 유형은 열대우림 동맹 인증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작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그리게이션 추적성 유형은 열대우림 동맹 인증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작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농장 CH는 세그리게이션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매스 밸런스*를 적용할 수 있는 작물은 카카오, 가공과일(오렌지 주스 포함), 헤이즐넛, 캐슈, 아몬드, 코코넛 오일, 꽃¹, 주요 허브류 및 향신료²입니다. 모든 공급망 인증서 보유자(첫 번째 및 그 이후의 구매자)는 해당 작물의 추적성 유형을 매스 밸런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농장 CH는 헤이즐넛, 캐슈, 아몬드, 코코넛 오일, 꽃에 매스 밸런스 추적성 유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¹ 꽃의 경우, 매스 밸런스 추적성은 주어진 기간(일/주/년) 내로 CH가 수령한 투입된 인증 제품(줄기) 수가 기준이며, 그로 인해 CH가 최종 제품에 투입된 인증 제품 비율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² 주요 허브류 및 향신료는 루이보스, 바닐라, 사프란, 후추, 시나몬, 칠리 페퍼, 오레가노, 고수, 파프리카, 카다멈, 딜, 클로브, 파슬리, 육두구, 타임, 월계수잎, 로즈마리, 타라곤입니다.



2. 추적성

요건 2.1.7 - 중복 판매

중복 판매는 여러 인증 제도하에서 인증된 제품의 동일한 수량을 한 번은 열대우림 동맹 인증으로, 나머지 한 번은 다른 인증 제도 또는 비인증 제품으로, 총 두 번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복 판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농장에서 생산한 커피 100톤은 유기농 인증과 열대우림 동맹 인증을 모두 받을 수 있고 다음과 같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열대우림 동맹 인증으로 ~~만~~ 100톤 판매 또는
- 유기농으로 ~~만~~ 100톤 판매 또는
- 한 명의 구매자에게 열대우림 동맹 인증 및 유기농 100톤으로 판매(한 배치로 한 번에)

하지만 동일 용량의 커피를 유기농 커피 100톤 ~~과~~ 열대우림 동맹 인증 커피 100톤으로 별도로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3. 온라인 플랫폼의 추적성

추적성 플랫폼 활동 내용

열대우림 동맹 추적성 플랫폼은 공급망을 통한 열대우림 동맹 인증 제품의 이동을 반영하며 인증서 보유자(CH) 단계에서 시행됩니다. CH가 다중 사이트에서 인증된 경우에는 다중 사이트 관리자(중앙관리자)에게 추적성 요건을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일한 인증서에 포함된 사이트 간의 인증 제품의 이동에 대해서는 추적성이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는 법적 소유를 따릅니다. 하지만 협력업체가 관여되어 있는 경우처럼 어떤 경우에는 물리적 소유를 따릅니다. 보고에는 인증 제품의 판매, 전환, 확정, 혼합, redeem, 제거가 수반됩니다.

CH가 인증 제품을 가공하는 과정 (예로 들면 제조) 을 수행하는 협력업체와 일한다면 이러한 전환은 반드시 협력업체가 직접 보고하거나 CH의 프로필에 협력업체의 활동 내용을 추가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요건 2.1.9 - 인증 제품 전환

인증 제품 자체가 변하는(예: 생두에서 원두로) 가공 활동 및 다른 제품이 되지만(예: 복합원재료 제품) 인증 제품은 변하지 않는 제조와 같은 활동의 경우, 공급망 CH는 앞으로 판매 전에 추적성 플랫폼에 '전환(conversion)' 및/또는 '제조 보고(report manufacturing)'를 등록해야 합니다.

앞으로 추적성 플랫폼에서 판매하지 않아도 되고 공급망 CH가 'redeem'해야 하는 수량의 경우, 'redeem' 전에 '전환(conversion)' 및/또는 '제조 보고(report manufacturing)' 활동을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차 제외).

차 회사는 수량을 교환하기 전에 반드시 '전환(conversion)' 및/또는 '혼합(mixing)' 활동을 항상 보고해야 합니다.



요건 2.1.9 - 전환율

아래 표는 전환이 허용되는 부문에 대한 매스 밸런스 전환율을 보여줍니다. *세그리게이션과 아이덴티티 프리저브드*에 대한 허용 전환율 범위는 추적성 플랫폼에 미리 설정되어 있습니다.

작물/부문	전환율
카카오	
콩 → 리큐어	1:0.82
콩 → 닙스	1:0.82
닙스 → 리큐어	1:1
리큐어 → 버터 및 분말	1:0.5:0.5
초콜릿 → 초콜릿	1:1
헤이즐넛	
인셀 → 알맹이	1:0.5
알맹이 → 구운 알맹이	1:0.94
알맹이 → 가공 알맹이(예: 데친 알맹이, 잘게 썬 알맹이, 얇게 썬 알맹이 등)	1:1
구운 알맹이 → 구운 가공 알맹이	1:1
코코넛	
신선과일 → 코프라	1:0.25
코프라 → 미가공 코코넛 오일	1:0.62
미가공 코코넛 오일 → 정제 코코넛 오일(RBD)	1:0.96
미가공 코코넛 오일 → 정제 코코넛 오일(경화)	1:0.96
오렌지	
신선과일 → 가용성 고형물(SS)	가용성 고형물 1Kg = (신선과일 X박스 / 66브릭스 FCOJ 톤당 Y박스) × 1000 × 66%
가용성 고형물 → 주스(FCOJ)	1:1
가용성 고형물 → 주스(NFC)	1:1
주스 → 환원주스	1:1
캐슈 및 아몬드	
인셀 → 알맹이	1:0.25
알맹이 → 가공 알맹이	1:0.95
알맹이 → 구운 알맹이	1:0.95
알맹이 → 페이스트	1:1
구운 알맹이 → 구운 가공 알맹이	1:0.95
구운 알맹이 → 페이스트	1:1



요건 2.2.1 – 인증 제품 발신 거래 관리

모든 B2B 인증 제품 판매는 반드시 농장 CH에서 다음 중 하나시점까지 열대우림 동맹 추적성 플랫폼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 a) 인증 제품이 CH의 브랜드의 최종 소비자용 완제품으로 포장되고 CH 브랜드의 라벨이 부착되는 시점까지. 이 경우, 인증 제품은 추적성 플랫폼에서 'redeem'됩니다³.
- b) 소비자용 완제품을 제조하는 공급망 CH가 브랜드 소유자에게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 이 경우, 추적성 플랫폼에서 브랜드 소유자에게 인증 제품의 판매 거래가 발행됩니다.

소매 단계에 대한 추적성은 대개 선택적입니다(차 포함). 하지만 SD/SI 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는 소매업체(차 제외)의 경우에는 추적성은 항상 의무사항입니다.

추적성 참여를 원하지 않고 추적성 참여가 필수도 아닌 소매 브랜드 소유자의 경우, 최종 제품 제조업체는 소매업체에 판매를 보고하지 않고 자사 계정에서 해당하는 수량을 'redeem'할 수 있습니다. 소매업체가 추적성에 참여하기로 했다면 최종 제품 제조업체는 이들에게 판매를 보고해야 합니다. 소매업체는 자사 추적성 계정에서 수량을 'redeem'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건 2.2.2 – 인증 제품 수신 거래 관리

공급자가 판매한 인증 제품의 거래는 반드시 인증 제품을 구매하는 CH가 검토하고 확정⁴해야 합니다.

수신 거래 수량이 많은 회사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선택된 공급자의 모든 거래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확정하는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파트너(Trusted Trade Partner)'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건 2.2.3 – 인증 수량 제거

인증 제품이 비인증 제품 혹은 열대우림 동맹 인증이 아닌 다른 인증 제도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판매되거나 수량이 손상 및/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추적성 플랫폼에서 제거됩니다.

매스 밸런스 수량은 플랫폼에서 제거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할 경우) 해당하는 동일 인증 수량이 판매되고 나면 구매자에게 판매 거래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요건 2.2.1 및 2.2.3 – 보고 시기

거래는 반드시 물품이 출하된 분기(1~3월, 4~6월, 7~9월, 10~12월)가 끝난 후 늦어도 2주 내에 추적성 플랫폼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 예시 1: 실물 판매가 5월에 완료됨 - CH는 늦어도 7월 14일까지 반드시 판매 거래를 보고해야 합니다.

³ Redeem = 브랜드를 소유한 인증서 보유자는 추적성 플랫폼에서 최종 소비자용 제품으로 판매되는 수량에 대한 추적을 끝냅니다. 'redeem' 활동은 열대우림 동맹 인증 제품에 대해 온라인 추적성이 종료됨을 나타냅니다.

⁴ 확정 = 세부 사항이 청구서 및 공급자와의 계약 관련 세부 사항과 일치하는 경우 CH는 인증 공급자로부터 수신 거래 세부 사항(수량, 추적성 수준 및 제공된 기타 참고 자료)을 검토하여 승인합니다.



- 예시 2: 인증 수량이 12월에 비인증 제품으로 판매됨 - CH는 다음 해 1월 14일까지 추적성 플랫폼에서 인증 제품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CH의 공급자가 CH와 구매자에게 아직 판매를 신고하지 않아 CH가 정해진 기간 내로 구매자에게 인증 제품 판매를 보고하지 못하는 경우, CH는 공급자에게 연락을 취한 것을 입증하여 적정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요건 2.2.5 – 거래 총계

추적성 플랫폼에서 여러 건의 출하가 하나의 거래로 합쳐지는 경우, CH는 개별 출하건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반드시 거래에 이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개별 수량, 청구서 번호, 출하 코드, 거래일자 등의 정보를 포함하거나 이러한 정보를 포함한 Excel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매스 밸런스

요건 2.3.1 – 제품 전환

열대우림 동맹의 매스 밸런스 규칙에 따라 비인증 제품을 인증 제품으로 판매하려면 제품 수량 전환은 동일한 제품에 대해 또는 다음 예시처럼 실제로 물리적 가공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만 가능합니다.

- 인증 카카오 버터 → 비인증 카카오 버터
- 인증 카카오콩 → 비인증 카카오콩
- 인증 인셀 헤이즐넛 → 비인증 구운 헤이즐넛 알맹이
- 인증 미가공 코코넛 오일 → 비인증 정제 코코넛 오일

다음 예시처럼 역방향으로의 제품 전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인증 카카오 리큐어 → 비인증 카카오닙스
- 인증 초콜릿 → 비인증 카카오 버터
- 인증 카카오 버터 → 비인증 카카오 분말(그 반대도 마찬가지)
- 가공 헤이즐넛 알맹이 → 인셀 헤이즐넛

열대우림 동맹 인증 복합원재료 제품(예: 초콜릿)에서 기존 방식의 단일원재료 제품(예: 카카오 버터)으로의 제품 전환도 역방향의 전환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열대우림 동맹 인증 복합원재료 제품(예: 허브차)에서 기존 방식의 복합원재료 제품(예: 허브차)으로의 제품 전환은 허용됩니다.



요건 2.3.3 및 2.3.4 – 원산지 일치

카카오 부문의 경우, 다음의 원산지 일치 요건 및 정의가 적용됩니다.

정의

연간 수량	12개월 동안 실제 인증 리큐어 판매량의 총수량(원산지 기준)입니다.
원산지	인증 카카오콩이 생산된 국가입니다.
원산지 발자국	추적성 플랫폼에서 인증 카카오 수량에 대한 농장 CH의 원산지입니다.
원산지 일치	인증 카카오를 구매할 때 구매량에 상당하는 비인증 카카오를 인증된 카카오로 판매하려면 두 가지 수량의 원산지가 동일해야 합니다(구매별 또는 총계 기준).
조달 계획	원산지 일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바뀌는 인증 조달을 시행하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반드시 열대우림 동맹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범위

본 문서에 명시된 것처럼 제1단계 요건의 경우 2021년 4월 1일부터 체결된 계약에 따라, 제2단계 요건의 경우 2023년 10월 1일부터 체결된 계약에 따라 추적성 플랫폼에서 완료된 모든 거래에 대해 원산지 일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원산지 일치가 필요하고 추적성 플랫폼에 원산지 발자국이 표시된 모든 매스 밸런스 인증 카카오 제품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열대우림 동맹은 조달 계획 승인에 기반하여 특정 수량 및 원산지에 대해 원산지 일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1단계 요건

카카오콩 및 카카오닙스

공급망 CH 간에 이루어진 각각의 인증 카카오콩 및 카카오닙스 매매 거래 100%에 대해 원산지 일치가 필요합니다. 인증된 것으로 판매된 카카오콩 및 카카오닙스 매매 문서에는 반드시 인증 카카오콩 및 카카오닙스와 비인증 카카오콩 및 카카오닙스 모두에 대해 국가 수준의 원산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카카오 리큐어

총계 수준에서 공급망 인증 카카오 리큐어의 최초 판매에 대해 12개월마다 원산지 일치가 필요합니다(예외는 아래의 제2단계에 기재). 회사는 인증된 매스 밸런스 리큐어의 원산지 일치를 위해 반드시 연간 수량을 계산해야 하며 계산을 증명할 자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공급망 CH 인증서 보유자 수준에서 요구되는 문서에는 인증 및 비인증 카카오 투입량에 대한 국가 수준의 원산지 정보가 포함됩니다.



총 인증 리큐어 판매 원산지와 연간 수량이 비교됩니다. 부피 기준 최소 80%까지 원산지 일치 필요합니다.

원산지 일치가 12개월 기간 동안 8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3개월 내에 부피 격차가 보충되어야 합니다.

제2단계 요건

코트디부아르, 가나 및 에콰도르 수출품

모든 제1단계 요건에 더해, 원산지 국가 외부의 인증 카카오 리큐어, 버터 또는 분말의 각 수출 판매 100%에 대해 원산지 일치가 필요합니다(코트디부아르, 가나 및 에콰도르의 경우). 수입자 이후의 공급망 단계에 있는 CH에 대해서는 원산지 일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산지 지역 접근법

아래 표에 명시된 것처럼 카카오콩 및 카카오닙스를 제외한 모든 제품에 대해 특정 소규모 원산지를 지역별로 결합하여 원산지 일치가 수행될 수 있습니다.

지역	국가	예외
서아프리카	기니, 라이베리아, 토고, 시에라리온, 기타 아프리카 지역	비포함: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마다가스카르 또는 중앙아프리카 및 동아프리카에 포함된 국가
중앙아프리카 및 동아프리카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적도기니, 가봉, 상투메프린시페, 탄자니아, 우간다	비포함: 카메룬, 마다가스카르
남미	벨리즈,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그레나다,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산타루시아, 트리니다드토바고, 베네수엘라 및 기타 미주 지역	비포함: 브라질,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페루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피지, 인도,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태국, 바누아투, 베트남, 기타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	비포함: 인도네시아